◉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6-27호

『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』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을 변경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1월 25일

새만금개발청장

새만금 사업지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1. 새만금 사업지역 변경

구분	면적		
	기 정	변 경	증 감
사업지역	404.3㎢	401.7㎢	감) 2.6㎢

ㅇ 변경내역 : 고군산군도 3,258,146.4㎡ → 625,475.2㎡(감2,632,671.2㎡)

-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7,429.0㎡ → 0㎡ (감 477,429.0㎡)
-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1,315,811.6㎡ → 294,718.0㎡ (감 1,021,093.6㎡)
-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,464,905.8㎡ → 330,757.2㎡ (감 1,134,148.6㎡)

2. 새만금 사업지역 변경(해제)지적 : 1,116필지 2,632,671.2㎡

3. 지형도면 : 도면 게재 생략

4. 열람방법

ㅇ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(http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 가능